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 1. 16 선고 2019가단5144953 판결 [구상금 등 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기풍(담당변호사 송명근)

피고B

변론 종결2019. 12. 5.

판결 선고2020. 1. 16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65,893,61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. 4. 18.부터 2019. 5. 17.까지는 연 6%의, 그다음 날부터 2019. 7. 5.까지는 연 7.65%의,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.
2. 피고는 이 사건 공동피고 C1) 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4. 제1,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인정 근거: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, 제150조 제3항)

판사이영훈

별지

- 1) 공동피고 C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취지 부분에 관한 화해권고결정은 확정되었다.